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發展 方向

李 星 鎬

(延世大 教育學科)

本稿에서는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發展 方向을 大別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한다. 첫째는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性格을 생각해 본 다음, 둘째로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機能을 논의한다. 셋째로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그러한 機能을 발휘하려면 어떠한 條件들이 先決되어야 하겠는가를 논의함으로써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물론 이러한 발전 방향은 長期의인 展望 아래 段階的인 接近으로 제시됨이 바람직하겠으나, 本稿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단계별 발전 방향보다는 總體的인 방향 제시에 국한함을 전제해 둔다.

1.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性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韓國大學教育協議會法’에 의하여 설립·육성되고 있는 社團法人이다. 그리고 同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설립 목적은 “大學 運營의 自主性を 높이고 公共性を 昂揚하며 大學의 相互協力을 통하여 大學教育의 健全한 發展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同法은 大學의 長은 위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同法의 제15조에 보면 “協議會는 會計年度의 歲入·歲出決算書에 當해 연도의 事業 執行 實績을 첨부하여 다음 會計年度 개시 후

2월 이내에 文敎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제16조는 “會員은 協議會의 總會나 理事會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명문화되어 있다. 제17조는 文敎部長官이 소관 업무 일부를 協議會에 委託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18조는 大學評價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과 평가의 결과를 文敎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韓國大學教育協議會法과 그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定款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性格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명하게 규정해 주고 있다.

첫째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法的으로 그 조직과 기능이 보장되어 있다. 더불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事務局 職員들의 身分도 보장되고 있는 셈이다. 둘째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文敎部와 垂直的인 관계에 놓여 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文敎部長官에게 제출해야 하는 일이나 評價 結果를 文敎部長官에게 제출해야 하는 일, 文敎部로부터의 委託 業務를 맡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등은 그러한 垂直的 關係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셋째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會員大學間의 관계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會員은 현재 모든 4년제 大學의 長으로 되어 있다. 반드시 會員이 되어야 함을 명문화시키지는 않았어도 현실적으로 모든 大學은 예외 없이 會員으로 되어 있는 바, 會員이 되는 데는 自發性

보다는 義務性이 더욱 짙다. 또한 각 大學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의 결정 사항을 준수해야만 하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각 大學과 水平的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끝으로 이러한 일련의 특성들은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機關 性格을 일종의 관료적 공공 기관으로 인식되기 쉽게 하고 있으며, 그것이 大學間의 自律的인 協議機構로 인식되기에는 法的 裝置가 다소 硬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이러한 法的 뒷받침이 있었기에 지난 6년 동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등 협의회 법이나 定款에 명시된 機能을 성실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韓國大學教育協議會法이 있으므로 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의 存在가 法的으로 보장될 수 있었음은 고무적인 일이고,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그 법이나 定款에 明示된 대로 大學 運營의 '自主性'과 '相互協力'을 고양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自律的 協議機構로서의 性格을 보다 분명히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現行의 규정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계속 존재하는 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의 官僚的 機構로서의 인식은 大學社會內에서 불식되기 어렵다. 그러한 인식은 韓國大學教育協議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會員大學이 同協議會에 대한 心理的으로 完全한 構成員 意識(full psychological membership)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어쩔 수 없이 會員이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會費를 부담하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시늉을 해야 하는 의식이 각 會員大學에 팽배한다면, 원래 의도한 대로 自主性 제고나 相互協力 고양은 단지 구호에 불과하고 말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각 會員大學이 진정한 참여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同協議會 活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責務意識을 內生的으로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文敎部와 맺고 있는 垂直的 關係, 그리고 각 會員大學과 맺고 있는 垂直的 關係를 재검토 하여야 한다. 前者의 경우는 別個의 獨立된 水平的 關係로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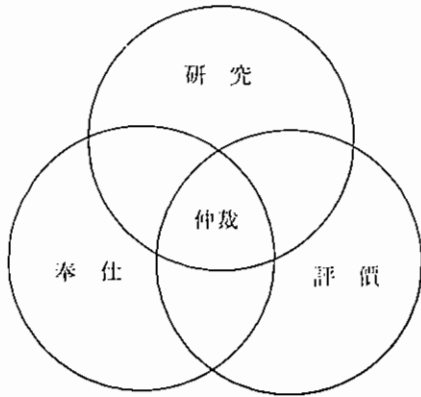
정되어야 하며, 後者의 경우에는 會員 加入의 自願性을 원칙으로 하여 會員大學間의 協議와 決定에 대한 執行機構로서의 性格 전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어떠한 형태로든 未來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官主導가 아니라 진실로 大學間의, 大學人들에 의한 그리고 大學의 利益과 發展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大學의 自律的인 學主導 협의 기구로서의 性格을 확립하는 發展 課題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2.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機能

현재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수행하고 있는 機能은 여덟 가지이다. 즉 ① 大學의 教育制度와 그 運營에 관한 연구 개발, ② 大學의 學生選拔制度에 관한 연구 개발, ③ 大學의 財政支援策 및 그 조성 방안, ④ 大學의 教育課程 및 教授方法의 연구 개발과 보급, ⑤ 大學의 評價, ⑥ 大學 敎職員의 研修, ⑦ 文敎部長官이 委託하는 事業의 수행, ⑧ 기타 大學相互間의 協同에 관한 業務의 施行이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의 1986년도 年次報告書에 따르면, 主要事業 推進 實績으로 10가지가 적혀 있다. 즉 ① 大學評價 사업, ② 大學教育에 관한 세미나, ③ 大學教育 調查研究 사업, ④ 大學 行政管理職 연수, ⑤ 大學 新任教授 研究 課程 운영, ⑥ 大學 關係者 國際交流 활동, ⑦ 會誌「大學教育」발간, ⑧ 大學教授招聘情報室 운영, ⑨ 大學間 協議體 운영 지원, 그리고 ⑩ 資料室 운영 및 圖書配布 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을 協議會法에서 명시한 8가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韓國大學教育協議會는 나름대로 法的 機能 수행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음이 분명하다. 또한 나름대로 事業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였음도 사실이다. 大學間의 相互協力을 조장하고, 大學 運營의 自主性을 제고하기 위한 事業도 수행하려고 노력하였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래의 韓國大學教育協議會는 그 機能發揮에서 좀더 성숙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수행해 온 機能과 事業을 근간으로 하여 미래의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기능을 좀더 체계화시켜 나타내면, 뒤의

〈표 1〉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機能



그림과 같이 네 가지 機能으로 再體制化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즉 ① 研究의 기능, ② 奉仕의 기능, ③ 評價의 기능, ④ 仲裁의 기능 등 네 가지이다. 이들 네 가지 기능을 좀더 구체적으로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1) 研究의 機能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韓國 高等教育 전반에 걸친 연구의 中樞的 기구가 되어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의 類型別로 볼 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專門大學, 教育大學 등을 포함한 모든 4년제 大學, 大學院 등 中等教育 이후 수준의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研究의 中心體가 되어야 한다. 研究의 內容에 있어서도 制度와 政策 研究는 물론, 각 學問領域別 교육과정 개발 연구, 授業體制의 연구, 教授資質 개발 연구, 學生指導 연구, 大學의 行·財政 연구, 大學의 施設 및 資源의 연구 등 高等教育 발전에 관련된 제반 研究를 수행하여야 한다. 研究方法에 있어서도 그것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자체 研究陣에 의한 연구는 물론, 會員大學 教授들에 의한 共同研究, 각 大學別로의 자체 機關研究(institutional research), 國際 共同研究 등 여러 가지 方式으로 活性化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연구 사업은 基礎研究에서 應用研究, 開發研究로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그러한 연구 사업 추진을 통하여 大學教育 또는 高等教育 발전에 대한 창의적 사고가 끝없이 발휘되고 존중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들 일컬어 大學

은 새 솟는 知性의 源泉이라 하거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그러한 知性의 源泉들이 한 줄기 강물을 이루어 흐르게 하는 改革과 發展의 發電所와 같은 原動力 구실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研究機能이 확대·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奉仕의 機能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大學에 君臨하는 存在가 아니다. 각 大學, 특히 會員大學이 더 이상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필요없다고 하면 스스로 門을 닫을 수도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會員大學의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存在의 필요성이 각 會員大學에 의하여 절실히 느껴지고 환영받는 존재로 서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겠는가? 한마디로 그것은 奉仕의 機能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있으므로 인해서 각 會員大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경우처럼 資料室을 운영하고, 圖書 資料를 제작하여 配布하며 「大學教育」誌를 통하여 아이디어를 交流시켜 주어야 한다. 行政管理職을 연수시킴으로써 그 資質을 개발해 주고, 新任教授 研究課程을 운영하며, 大學教授 招聘情報室을 운영하는 것 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미리부터 이러한 奉仕의 機能을 충분히 인식하고 연구하여 개발해낸 奉仕 事業들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이 評價할 수 있다. 이러한 奉仕 機能은 한 걸음 더욱 발전됨이 필요하다. 예컨대 大學의 요청이 있으면 그 大學의 教授 資質 開發 워크샵을 主掌해 주는 일, 특정 會員大學이 자체의 問題解決을 위한 연구를 위촉하는 경우에 그 연구를 수행해 주는 일, 會員大學이 外國의 大學과 어떤 연유에서 연계를 맺고 싶어 할 때 그것을 중간에서 이어주는 일 등 많은 측면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奉仕的 機能을 더욱 活性化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奉仕의 기능은 어디까지나 會員大學의 自願에 의한 것이어야지 奉仕的 機能의 美名下에 수행되는 반강제적인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大學 行政管理職 研修의 경우 프로그램을 좀더 매력 있게 作成하여 각 會員大學에 널리 公告하면, 그

것을 보고 會員大學에서 너나 할 것 없이 參與하고 싶은 欲求가 형성되고, 참가비를 내면서까지 참여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하지, 그것이 결코 각 회원 대학에서 1~2명씩 의무적으로 차출하여 보내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評價의 機能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수행하여 왔던 사업이 아마도 大學評價 事業일 것이다. 그렇기에 '韓國大學教育協議會' 하면 많은 大學人들 사이에 評價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에 있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그동안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大學評價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그것은 상당한 結果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大學評價의 理念을 재정립하고 評價의 준거를 개발하고, 評價의 節次를 좀더 체계 있게 심화시키고 民主化·科學化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大學評價가 각 大學에 미친 영향도 자못 크다. 大學 發展에 대한 大學人들의 안목을 넓히는 데도 자못 큰 공헌을 하였다. 물론 지금까지 大學評價 사업을 통하여 평가 사업 그 자체에도 상당한 문제들이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고, 또 會員大學들로부터도 많은 질책과 건의를 받았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래의 韓國大學教育協議會는 그러한 평가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평가 기능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평가 사업도 機關綜合評價, 學問領域別 評價, 自體分析研究에 의한 평가 체제에서 좀더 발전시켜 大學의 教育課程評價, 財政·經營評價, 施設·設備評價, 大學環境評價, 教授業績評價 등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좀더 발전적이라면 현재 大學에 대한 學術助成研究費 관리 업무까지 연계를 시켜 研究計劃과 研究結果를 평가하는 일도 생각할 수 있다. 어디까지 평가 사업의 영역을 확대시키느냐 보다는 評價의 理念이나 目的 그리고 節次에 대한 開發이 先行되어야 한다. 評價는 결코 等級을 매기고 當落을 결정하며 適否를 판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評價結果를 통하여 大

學의 發展을 조장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해주는 수단적 절차로서의 評價 事業들이 구안되고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評價 結果를 적극 活用하는 方案을 시급히 연구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즉, 평가 결과에 대한 報償力(reward power)을 韓國大學教育協議會 자체가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일정한 固有 權限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大學의 定員을 조정하거나 學科의 新設을 허용하는 일, 大學 卒業者에게 무시험 검정으로 어떤 專門分野의 資格을 부여하는 일, 學術研究助成費를 배분하는 일, 海外 教授 交流를 결정하고 支援하는 일과 같은 報償力을 발휘할 수 있는 方略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4) 仲裁의 機能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그 法이나 定款에 명시된 대로 相互協力을 성실히 조장하여야 한다. 여기서 相互協力は 大學間의 相互協力일 뿐만 아니라, 大學外에서의 大學과 政府, 大學과 產業體, 大學과 初·中等教育機關, 大學과 地域社會, 大學과 學父母, 그리고 국제적으로 국내 大學과 외국 大學間의 協力을 증진하는 기능으로 擴大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大學과 產業體의 協力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외국 대학이나 외국의 고등교육 기구와의 협력 증진에도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그러한 協力は 대체로 韓國大學教育協議會 자체와 관련 기관간의 協력이었지, 그러한 協력을 통하여 會員大學이 실질적으로 얻은 혜택은 그리 크지가 않다. 앞으로의 仲裁 機能은 會員大學의 이익 증진과 발전에 보다 직접 연결될 수 있는 次元에서 개발되고 추진되어야만 할 필요가 크다. 예컨대 오늘날 일부 大學에서 學內問題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때, 大學間의 自律協議機構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仲裁 機能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껍이나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하는 希求가 있을 수도 있다. 官이 介入하느냐 안 하느냐, 公權力이 介入하느냐 안 하느냐의 논의보다는 大學人 서로가

서로의 大學을 염려하고 함께 뜻을 모아 도울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진실로 불가능한 일인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大學間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지 大學外에서 멀리 위치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大學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會員大學을 위한 기구라던, 진실로 會員大學을 염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方略을 강구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미래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會員大學의 복지와 개선을 위한 중제의 구심점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發展을 위한 先決課題

이상에서와 같이 本稿에서는 미래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機能을 研究, 奉仕, 評價, 仲裁의 네 가지로 생각하여 보았다. 이들 네 가지 기능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앞서 1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存在 性格에 대한 再檢討와 아울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先決 必要條件들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組織의 改編

현재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總會, 理事會, 會長, 副會長, 事務總長, 諮問委員會, 專門委員, 그리고 4개의 研究委員會(편집위원회 포함), 총무부, 평가관리부, 교육자료부, 연구개발부 등을 두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위에서 열거한 네 개의 機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하나는 高等教育 연구를 전담하는 研究所를 부설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4개 行政部署를 확대하여 예컨대 총무부, 연구부, 평가부, 국제부, 출판부, 자료부 등으로 分化 發展시키는 일이다.

前者的 研究所는 앞서 제시한 研究 機能에 부응하는 제반 研究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研究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高級 專門人力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研究所에는 이를테면 政策研究部, 教育課程研究部, 學生指導研究部, 敎授開發研究部, 評價事業研究部 등을 두어 研究

를 영역별로 전담케 할 수 있다. 그리고 行政部署로서의 研究部는 이 高等教育研究所의 행정 업무를 支援하고 調整하는 일을 담당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研究部에는 常任研究員 이외에 각 大學敎授들 중 專門家들을 非常任研究員 또는 研究諮問委員으로 위임하여 활용하는 方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後者的의 행정 부서 개편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능이 확대되는 데 따른 業務量의 증가를 감안한 예시적인 구상이다. 그러한 행정 부서는 불필요하게 비대해져서도 안 되겠지만, 또한 機能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業務 分擔은 이루어져야 할 필요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組織 改編에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단순히 4년제 大學間의 協議機構로 存在하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 高等教育기관의 協議機構로 개편될 수는 없겠는가 하는 점이다. 즉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韓國高等教育機關協議會가 되고, 그 會員機構로 예컨대 專門大學長協議會, 大學 總(學)長協議會, 大學院長協議會(필요하다면 一般大學院長協議會와 專門大學院長協議會로 나누어서)를 둘 수는 없겠는가 하는 점이다. 앞서 本稿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機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어떠한 형태로든 高等教育機關이 참여하는 自律的 協議機構로 조직이 개편됨이 바람직하다.

2) 人力의 確保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事務局의 定員은 26명이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機能을 수행하려면 현재의 事務局 人員은 그 量과 質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量의 문제는 설명이 필요 없이 行政部署가 확대되고 研究所가 設立되면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質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研究員 制度를 두고, 그 직급을 先任研究員, 研究員, 研究員補로 나누고 있다. 研究員이나 先任研究員은 대부분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으며, 博士學位課程에 在學하고 있다. 우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기존의 연구원들의 質의 水準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

을어야 한다. 예컨대 현임의 연구원들이 博士學位를 취득한 후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誘引體를 사전에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研究員을 더욱 充員시킨다고 할 때, 그 質的 水準을 높여서 應聘시킴은 물론 우수한 人力을 誘引할 수 있는 報償體制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연구원들의 再教育과 經驗 확산을 위한 海外 長期研修制度도 점진적으로 도입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研究員들이 동참하는 研究課題에 있어서의 研究 業績도 대내외적으로 公認할 수 있도록 制度化되어야 할 것이다.

3) 財源의 確保

앞서 논의한 여러 機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財源은 대폭 확대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1986년도 세출 결산에 의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財源의 전체 세출액 중 자체 수입(주로 會費 수입)은 약 50.5%이고, 나머지 49.5%는 補助金 수입(주로 國庫 및 文敎部 補助金)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그 自律性을 최대한 享有하기 위해서는 財源 確保에 있어서 國家로부터 獨立하는 立場에 없다. 그러나 現實적으로 그것이 매우 어렵다고 할 때, 한 가지 가능한 노력은 自體 收入의 비율을 좀더 높이는 일일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와 같이 會費 依存만으로 자체 수입을 應당하려 할 때 會員大學에 대한 부담 가중이라는 측면에서 반발을 받을 수도 있다. 만의 하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會員大學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더우기 會員大學을 自願하는 大學만으로 규정한다고 할 때, 會員大學의 會費 증액은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會員大學의 會費 증액을 고려해 봄이 바람직하다. 會費 증액을 먼저 이룬다면 각 會員大學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資務性을 추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더욱 發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自體 收入을 증대하는 또 다른 방법은 현재의 「大學教育」誌라든가 각종 圖書 資料나 報告書를 有價化시킬 수 있을 것이다. 會員大學에게는 일

정한 부수를 무료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외의 경우에는 有價化시켜 自體 收益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產業體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產業體로부터 연구비나 기부금을 유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자체 수입만으로 財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보면, 필연적으로 國庫나 文敎部 補助金 收入에 일부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능한한 補助金 收入 의존율을 낮추도록 노력하되, 補助金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文敎部로부터 직접 보조받기보다는 國庫에서 직접 보조받는 방안을 강구해 봄도 한 가지 연구 과제라 하겠다. 筆者가 그러한 財源 決定과 配分 문제에 대하여 문의한 것이 때문에 더 긴 논의를 전개하기 어려우나, 오컨대 문제는 앞서 처음 부분에서 논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存在 性格을 보다 自律的 機構로 전환하는 일과 통제받지 않는 수준에서 國庫나 文敎部 補助金 수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뿐이다.

4) 教授의 參與 機會 擴大

끝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여러 機能을 活性化시키기 위해서는 會員大學 教授들의 폭 넓은 참여를 유인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참여 기회는 일부 교수들에게만 열려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地域, 專攻領域, 職級, 性別, 出身背景 등 모든 것을 초월하여 되도록이면 많은 教授들이 여러 부면, 여러 수준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活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文庫가 결코 높게 보여서도 안 되겠지만, 그 문턱이 어떤 부류의 일부 教授들에게만 자유로운 문턱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모든 教授들이 언제고 자유롭게 찾아들고, 자유로운 討論과 熟議의 場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大學間의 自律的 協議機構가 되려면 教授들간의 自律的인 協議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教授 개개인간의 協同 없이는 大學間의 協同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하겠다.

이상으로 本稿에서는 韓國大學敎育協議會의 發展 方向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물론 本稿에서의 논의가 모두 이상적이거나 最善의 方向이라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그동안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여러 가지 事業에 참여하였던 敎授의 입장에서, 또 會員大學의 한 敎授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權利를 지니고 있다는 次元에서 몇 가지 느끼고

있었던 점들을 피력한 것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들이지만 이러한 發展 方向 제시가 있음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제안들에 대한 신랄한 토론과 숙고가 계속됨으로써 더 좋은 제안들이 발상되어 배양되고 채택될 수 있기를 바란다. 특집으로 꾸미는 중의 한 편이기에 다른 글에서 그리고 계획된 좌담회를 통하여 더 좋은 發展 方案들이 논의될 것을 기대한다. *

〈大學敎授招聘情報室 등록 안내〉

大學敎授가 되고자 희망하는 고급 인력에 관한 情報과 資料를 확보하여 專任敎授를 초빙하려는 會員大學에 관련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 협의회 大學敎授招聘情報室은 아래와 같이 대학 교수 희망자의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1. 登錄對象

전국 4년제 대학 專任講師 이상의 敎授資格要件을 구비하신 분(단, 회원 대학의 現職敎授는 제외됨)

2. 登錄方法

본 협의회 의 소정 양식 '敎授資源人事記錄카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3. 登錄時期

年中 계속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4. 接受處

1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사학연금회관 503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내 대학교수초빙정보실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783-3065, 3067, 3068, 3891)